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10

발의연월일: 2025. 1. 2.

발 의 자: 송석준ㆍ이종욱ㆍ김종민

김선교 · 김성원 · 김예지

이종배 · 서범수 · 박형수

윤상현 • 박덕흠 • 조배숙

주진우 • 유상범 • 김미애

장동혁 · 이헌승 의원

(179])

제안이유

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,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유가족, 상이자, 기초생활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5천만원 이하의 저축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과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.

그런데 동 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되는 일 몰제로 운영되고 있지만, 최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서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, 배당소득 에 대한 비과세 연장을 통해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지 원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65세 이상인 고령자,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유가족, 상이자, 기

초생활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,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기존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,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(안 제88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8조의2(비과세종합저축에 대	제88조의2(비과세종합저축에 대		
한 과세특례) ① 다음 각 호의	한 과세특례) ①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			
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			
(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			
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			
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			
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			
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			
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			
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			
다)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			
는 저축(이하 이 조에서 "비과			
세종합저축"이라 한다)에 <u>2025</u>	<u>2026년</u>		
<u>년 12월 31일</u> 까지 가입하는 경	12월 31일		
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			
자소득, 배당소득에 대해서는			
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